김제지평선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10.30. / 소득 및 기간요건 완화]

1. 건설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평선산단2길 319 백산마을 120호

- 입주자 모집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종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온라인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MyMy서비스" 적용 단지입니다. 자세한 활용 방법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10.30.(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공고('23.12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 집하는 공고이며, <mark>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mark>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입주자격완화 순위	입주자격완화 내용						
	■ 소득요건 (전년도 도						
	공급대	대상	가구원수	일반조건			
	디스나 치그	시중되다	1인	120% 이하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2인	110% 이하			
	ゼナエバー	1, 포경시	3인 이상	100% 이하			
	맞벌이 신	l호부부	2인	130% 이하			
1순위			3인 이상	120% 이하			
	■ 기간요건	공급대상					
			일반조건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	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	7년 이내				
	CETT	자녀의	6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 소득요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기	· 구당 월평균소득)				
	공급대	대상	가구원수	【완화조건】			
	-U+11U +114		1인	140% 이하			
2순위	대학생, 청년		2인	130% 이하			
- - .,	한부모가족	ī, ㅗ칭시	3인 이상	120% 이하			
	пьноги	làuu	2인	140% 이하			
	맞벌이 신	L'온구구	3인 이상	130% 이하			

	■ 기간요건					
	공급대상 【 <mark>완화</mark> 조건】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	에 종사한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	10년 이내			
	건준구구	자녀의	9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9세 이하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고그대사 [아침도경]					

3순위

- 공급대상【완화조건】전체150% 이하
-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 * 입주자는 [자격완화순위 ▶ 일반공급순위 ▶ 추첨] 순에 따라 선정되며 자격완화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자격완화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 자격완화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김제지평선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을 일반형 행복주택으로 전환 공급하는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일(2025.10.3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1985.10.31. ~ 2006.10.30. 출생)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완화조건】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④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1960.10.30. 이전 출생)
 -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 전북지역본부)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공급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적격자가 공급호수를 초과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공급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	면적(m²)		+1 =11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건설 호수	입주자	예비자	주거	주거	그 : 공용		합계	최대 거주 기간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월						
02	-110	(120)	(48)	(36)	전용	공용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업계	/TE (년)	난방	612						
	대학생									10								
26A1,	청년									10								
26A2,	신혼부부·한부모	38	26	10	26.88	14.6020	5.0406	-	46.5226	10~14								
26A3	주거급여수급자									20								
	고령자									20								
26B1, 26B2 (주거 약자용)	고령자	6	6	2	26.88	14.6020	5.0406	-	46.5226	20								
	대학생									10								
	청년		14		6 36.35		6.8164	-	62.1136	10	구조 /							
36A	신혼부부·한부모	20		6		18.9472				10~14								
	주거급여수급자									20								
	고령자									20								
	대학생															10	복도식	′25.05.
36B1,	청년		-								10	/						
36B2,	신혼부부·한부모	32		10	36.78	19.5909	6.8971	-	63.2680	10~14	_ ·· —							
36B3	주거급여수급자													20		난방		
	고령자														20			
	대학생									10								
	청년	_	_		22-1					10								
36C	신혼부부·한부모	4	2	2	36.51	20.3355	6.8465	-	63.6920	10~14								
	주거급여수급자									20								
	고령자									20								
	대학생 청년									10								
E1A		20		_	E1 22	26 1 401	0.6040		96 0740	10 14	-							
51A	신혼부부·한부모 주거급여수급자	20	-	6	51.22	26.1491	9.6049	-	86.9740	10~14 20								
	- 무기급여무급자 고령자									20								

■ 임대조건

			임대조건				최대전환시		
공급	공급	임다	보증금(견	전원)	의이네크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 조건	
형별	대상	계	계임	잔금	월임대료 (원)	(천원)	양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대학생 · 청년(소득無)	17,306	865	16,441	93,740	(+) -	17,306	93,740	
	+11+4.1 = +->	40.00	215	47.100		(-) 14,000 (+) -	3,306 18,324	134,570 99,250	
26A1,	청년(소득有)	18,324	916	17,408	99,250	(-) 14,000	4,324	140,080	
26A2,	신혼부부·한부모	20,360	1,018	19,342	110,280	(+) 2,000	22,360	98,610	
26A3		-		•	<u> </u>	(-) 16,000 (+) -	4,360 15,270	156,940 82,710	
	주거급여수급자	15,270	763	14,507	82,710	(-) 12,000	3,270	117,710	
	고령자	19,342	967	18,375	104,760	(+) 1,000 (-) 15,000	20,342 4,342	98,920 148,510	
26B1, 26B2	고령자	19,342	967	18,375	104,760	(+) 1,000 (-) 15,000	20,342	98,920 148,510	
(주거약자용)						(+) 5,000	28,902	100,290	
	대학생・청년(소득無)	23,902	1,195	22,707	129,460	(-) 19,000	4,902	184,870	
	청년(소득有)	25,308	1,265	24,043	137,080	(+) 6,000	31,308	102,080	
	0 L(± ¬ н)	23,300	1,203	21,013	137,000	(-) 20,000	5,308	195,410	
36A	신혼부부·한부모	28,120	1,406	26,714	152,310	(+) 9,000 (-) 22,000	37,120 6,120	99,810 216,470	
	スココロムコエ	21 000	1 0 5 4	20.026	111220	(+) 2,000	23,090	102,560	
	주거급여수급자	21,090	1,054	20,036	114,230	(-) 17,000	4,090	163,810	
	고령자	26,714	1,335	25,379	144,700	(+) 8,000 (-) 21,000	34,714 5,714	98,030 205,950	
			1 10=		100.100	(+) 5,000	28,902	100,290	
	대학생ㆍ청년(소득無)	23,902	1,195	22,707	129,460	(-) 19,000	4,902	184,870	
	청년(소득有)	25,308	1,265	24,043	137,080	(+) 6,000	31,308	102,080	
36B1,						(-) 20,000 (+) 9,000	5,308 37,120	195,410 99,810	
36B2,	신혼부부·한부모	28,120	1,406	26,714	152,310	(-) 22,000	6,120	216,470	
36B3	주거급여수급자	21,090	1,054	20,036	114,230	(+) 2,000	23,090	102,560	
	, ,,,,,,,,,,,,,,,,,,,,,,,,,,,,,,,,,,,,,		.,		,250	(-) 17,000 (+) 8,000	4,090 34,714	163,810 98,030	
	고령자	26,714	1,335	25,379	144,700	(-) 21,000	5,714	205,950	
	대학생 · 청년(소득無)	23,902	1,195	22,707	129,460	(+) 5,000	28,902	100,290	
	-1178 8 (2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23,302	1,133	22,707	123,100	(-) 19,000	4,902	184,870	
	청년(소득有)	25,308	1,265	24,043	137,080	(+) 6,000 (-) 20,000	31,308 5,308	102,080 195,410	
36C	신혼부부·한부모	28,120	1,406	26,714	152,310	(+) 9,000	37,120	99,810	
300	ひとナナ・セナエ	20,120	1,400	20,714	132,310	(-) 22,000	6,120	216,470	
	주거급여수급자	21,090	1,054	20,036	114,230	(+) 2,000 (-) 17,000	23,090 4,090	102,560 163,810	
	그러디	26.74.4	4 225	25.270	144700	(+) 8,000	34,714	98,030	
	고령자	26,714	1,335	25,379	144,700	(-) 21,000	5,714	205,950	
	대학생 · 청년(소득無)	34,000	1,700	32,300	184,160	(+) 14,000	48,000	102,490	
	+11+11+11		405-		40=	(-) 27,000 (+) 16,000	7,000 52,000	262,910 101,660	
	청년(소득有)	36,000	1,800	34,200	195,000	(-) 29,000	7,000	279,580	
51A	신혼부부·한부모	40,000	2,000	38,000	216,660	(+) 20,000	60,000	99,990	
		-				(-) 32,000 (+) 11,000	8,000 41,000	309,990 98,330	
	주거급여수급자	30,000	1,500	28,500	162,500	(-) 24,000	6,000	232,500	
	고령자	38,000	1,900	36,100	205,830	(+) 18,000	56,000	100,830	
	1					(-) 30,000	8,000	293,330	

- 금회 공고는 직전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 및 해지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등으로 당첨자 발표시점의 공가호수 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 모집호수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추후 공가 발생 시순차적으로 개별 계약안내드리며,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 기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26B1,26B2)을 제외한 공급형은 각 형별로 계층을 통합하여 모집하며,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타입별 구분없이 전산추첨에 의해 결정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 26A1/26A2/26A3형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26B1/26B2형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36B1/36B2/36B3형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51A형 중 1세대는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9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용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 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공급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26B1,26B2)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m²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가(내국인)이 세대주로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 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 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30.) 현재, <u>무주택자</u>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⑨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⑪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②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구권구	1순위 일반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완화조건				
1인	4,317,797원 이하	120%	5,037,430원 이하	140%	5,397,246원 이하	150%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8,215,505원 이하	15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11,440,460원 이하	15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12,867,132원 이하	150 %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13,546,572원 이하	15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14,599,629원 이하	15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2순위 **842.446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

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 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김제시) 또는 연접지역(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이 거주지거 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전북특별자치도)이 거주지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30.) 현재, <u>무주택자</u>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⑰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⑪와 ②~⑥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①-②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5.10.31~2006.10.30)
- ①-④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완화조건】12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 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이하 (【완화조건】 14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2인인 경우 110% 이하 (【완화조건】 13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	기기이스	월평균소득금액							
신청자	가구원수	1순위 일반조	건	선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완화조건		
	1인	4,317,797원 이하	120%	5,037,430원	이하	140%	5,397,246원	이하	150%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	8,215,505원	이하	150%
세대주인 청년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	11,440,460원	이하	150%
(세대기준)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	12,867,132원	이하	15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13,546,572원	이하	15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14,599,629원	이하	150%
세대원(본인)	1인	4,317,797원 이하	120%	5,037,430원	이하	140%	5,397,246원	이하	15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2순위 **842,446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63만원 이하
-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 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3)의 '**예술인'**이란「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해당세대 범위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일반공급 순위

1소이	해당 주택건설지역(김제시) 또는 연접지역(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이 거주지거나
1순위	소득 근거지인 자
a스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2순위	않는 지역(전북특별자치도)이 거주지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30.) 현재, <u>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u> <u>모두 무주택자)</u>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②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④와 ③~⑥를, <u>한부모가족은</u> ①-⑤와 ③~⑥를 모두 갖춘 자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본인과 예비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①-②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①-④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 (한부모가족) 6세이하(【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완화조건】 **10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완화조건】120%(2순위), 150%(3순위))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완화조건】130%(2순위), 150%(3순위))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그ㅂ	고	월평균소득금액			
구분	가구원수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8,215,505원 이하 150%	
시승비비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11,440,460원 이하 15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12,867,132원 이하 150%	
한구ㅗ기ㅋ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13,546,572원 이하 15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14,599,629원 이하 150%	
	2인	7,120,104원 이하 130%	7,667,804 원 이하 140%	8,215,505원 이하 150%	
TLHI OI	3인	9,152,368원 이하 120%	9,915,065 원 이하 130%	11,440,460원 이하 150%	
맞벌이 신혼부부	4인	10,293,706원 이하 120%	11,151,514 원 이하 130%	12,867,132원 이하 150%	
	5인	10,837,258원 이하 120%	11,740,362 원 이하 130%	13,546,572원 이하 150%	
	6인	11,679,703원 이하 120%	12,653,012 원 이하 130%	14,599,629원 이하 150%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2순위 842,446원, 3순위 1,053,057원), 맞벌이 842,446원(2순위 912,650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u>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u>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63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신청자 직계존속신청자 직계비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 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 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김제시) 또는 연접지역(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이 거주지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전북특별자치도)이 거주지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완화조건】 **12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 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기 이스	월평균소득금액					
가구원수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1인	4,317,797원 이하 120%	5,037,430 원 이하	140%	5,397,246 원 이하	150%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 원 이하	130%	8,215,505 원 이하	15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 원 이하	120%	11,440,460 원 이하	15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 원 이하	120 %	12,867,132 원 이하	15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 원 이하	120%	13,546,572 원 이하	15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 원 이하	120%	14,599,629 원 이하	150%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2순위 842,446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63만원 이하

※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신청자 본인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신청자 직계존속신청자 직계비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신청자 직계존속신청자 직계비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 '주거급여수급자'란「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5.11.10.(월) 10:00 ~ '25.11.12.(수) 17:00	'25.11.17.(월)	'25.11.18.(화) ~ '25.11.20.(목)	'26.02.26.(목) 16:00 이후	[전자계약] ' 26.03.10.(화) 10:00
현장	′25.11.11.(화) 14:00 ~ 16:00	[조회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청약→청약결과확인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우체국소인이 '25.11.20.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주소)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조회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당첨자ARS (1661-7700)	~ ' 26.03.12.(목) 17:00 [현장계약] ' 26.03.11.(수)
		→서류제출대상자명단	주 거 복 지 사 업 1 팀 김제지평선 행 복주 택담당자	(1001-7700)	14:00~16:00

※ 현장접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평선산단2길 319, 김제지평선 행복주택 102동 북카페 * 계약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 불가하오니 우체국 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 <u>내부절차 사정등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u>, 변경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메뉴 → 『알려드려요』→ 『공지사항』)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I O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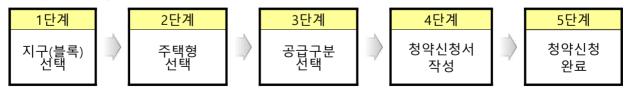
o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 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o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o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u>PC에서 스마트</u> <u>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u>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 서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o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o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 (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o 기타사항

-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5.11.10.(월) 10:00시부터 '25.11.12.(수) 17: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5.11.10.(월) 10:00시부터 '25.11.12.(수) 17: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ㆍ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 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청약 방법

- o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신청접수일 등 모집일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자에 따라「5.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 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장소

신청장소	김제지평선 행복주택 102동 북카페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평선산단2길 319		
일시	2025.11.11(화) 14:00~16:00		
약도	(B) 기행선산별로 1001 (B) 강제지오스테이선1차 104 (CU 강제지오스테이선1차 104 (구제행당 202 (공제영단인23 에서 가기지오스테이언2차이라면 204 (공건상개시사약호 기병선인2차 109 전기장 109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5.11.17(월) 16: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 C: LH청약플러스→『청약』클릭 → 『청약결과확인』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ㅇ 서류제출 방법

①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②방문접수, ③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o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PC·모바일)

• 인터넷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통한 서류제출은 "5. 신청서류"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PC: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시 전자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동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o 인터넷 서류제출시 유의사항(PC·모바일)

-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현장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현장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플러스 안내 참조)
- <u>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u> 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o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025.11.20. 18:00] 내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u>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 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u>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 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5505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김제지평선 행복주택 담당자 앞
- o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 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10.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mark>공공 마이데이터를</mark>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MyMy서비스 이용 안내>

- ※ 현장접수하는 경우 MyMy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 공공 마이데이터와 MyMy서비스란?

<mark>공공 마이데이터란</mark>,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MyMy서비스란, 서류제출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①종이서류 발급·제출 없이 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손쉽게 제출하고, ②수기로 서명해야 했던 서류(ex.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전자서명이 가능한 LH의 임대주택 청약 간편화 서비스입니다.

▶ MyMy서비스 신청

- 서비스 대상 인원 : 서류제출대상자인 세대주 및 세대원
 - ※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류제출 서비스는 세대원 전원이 동의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은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 서비스 대상 서류 : 공고문 상 제출 서류 안내의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O" 표시가 된 서류
- 신청방법(온라인접수 시 이용 가능합니다.)
 - · (세대주)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동의)"체크 → (세대원 있는 경우) 세대원 제공 요구(=MyMy서비스 동의) 요청
 - ※ 세대주는 청약플러스 內 SMS 발송 기능으로 세대원에게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제공 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MS 발송 비용 본인 부담 없음)
 - · (세대원)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세대원본인인증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동의)"체크

- 주의사항

- ① <mark>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mark> 공고문 상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X 혹은 불가"로 표기된 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일부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추가 정보 기입(입력)이 필요하며, 추가정보를 기입(입력)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입력) 시 연계가 불가능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고		부수
[필수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전자 서명)	- 1통
[필수제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가 거부됨		10
[필수제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필수제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예비입주자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중복선정 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1통
[필수제출] 확약서			1통
[선택]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통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주민등록표등본 1종 주가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 예비시호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축		1통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록표초본 <아대 애딩자인 제물> 목표초본 . 해단세대에 소하는 자리서 인즈자 모진고고인 이후 조소 또는 세대즈 변도이		1통
[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u>반드시 신청자 본인기준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u> (단,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확인된 경우 제외 가능)	0	1통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출생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 사실 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해당자만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0	1통
[해당자만 제출]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 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Х	1통
[해당자만 제출] 입양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Х	1통

■ 공급대상자별 <mark>추가 제출서류</mark>

-	공급대상	제출서류	MyMy 서비스 이용	발급처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붙임5 공사양식)제 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X	해당 대학
 대 학		· 졸업예정증명서	Х	
생 계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Х	해당 학교
층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Х	행정 복 지센터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0	
	공통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사본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Х	
 청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0	국민 연금공단
년 계 층	청년 (19세이상~	※ 국년권급 비가입자도 할입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0	등
	39세이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소득 없음으로 신청한 청년도 반드시 제출 ★	0	국민 건강보험 공단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0	국민 연금공단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0	국민 건강보험 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Х	지방고용 노동청
	사회초년생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Ο	국민 연금공단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Ο	국민 건강보험 공단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예술활동증명서	Х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0	국민 연금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0	국민 건강보험 공단
	해당자만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0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내역으로 발급)	0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X X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0	국세청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Х	해당직장 국세청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X	해당학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 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 한 경우 :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X	병무청
		-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U	
	공통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사본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Х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Х	행정복지 센터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붙임6 공사양식)	○ (전자서명)	-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붙임7 공사양식)	0	-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Х	
	예비 신 혼부부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Х	행정복지 센터
신		주민등록표등본,	0	
 혼 부 계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0	
기층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O (군인제와)	국민연금공단 등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Х	국세청 또는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Х	소년 해당 직장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0	국세청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해당직장 국세청 등
	고령자	※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없음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0	행정복지 센터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6.02.26.(목) 16: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인터넷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계약안내

- 전자계약 [기간: '26.03.10.(화) 10:00 ~ '26.03.12.(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 점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u>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u> <u>명부에서 제외됩니다.</u>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 니다.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우리공사 입금확인 (SMS 발송) (SMS 발송) 무리공사 입금확인 (https://irts.molit.go.kr) 로그인 (공동인증서/휴대폰인증) → 계약체결(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보관(공동전자문서센터)

- ※ <u>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u>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 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26.03.11.(수) 14:00 ~ 16:00]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 배우자
통장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서류
•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배우자 외의 자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운전면허증에 한함)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도장, 신분증	서명일 것),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u>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u> 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 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m²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 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참고) 무허가건물 확인 절차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②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시행령」제2조 각호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 동 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 -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자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동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총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트,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자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금융 산 자산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 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 기타 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자산 •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소득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 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모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산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 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 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 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70111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그용제비 포함경기
	7	금융자산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다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합격	합계에서 차감)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1227 04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보증금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 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거주기간 및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 재청약에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관한 기준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m²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예비입주자 📗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 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갱신계약 등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 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ᆺᄃᄀᄌᅟᅔ기ᅟᆈᄋ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 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 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 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중복입주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금지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신청 서류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안내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지구여건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단지특화도 등은 **입주자(신**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 **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로변, 공용 시설물,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지구 및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특성 • 인근 아파트(지오스테이션)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 세대는 소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경미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본 공동주택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각 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및 복도공간(102동 36C형 복도 전면 하늘포켓 포함)은 공용면적 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지구 인근 백석초등학교가 있으며, 기타 다른 세부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남동측 직선 약 222m거리에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가 있으며, 동방향 1km 이내 거리에 백산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북측 지평선산단로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왕복 4차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동측 백산로 (왕복 4차선)의 경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 위치한 시내(요촌동, 검산동)까지 운행 가능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근방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재협의 내용 포함)]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으니,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의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입주 후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도로변 등에 인접한 세대는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단지 내 공용시설 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 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동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제연휀룸(전체 동), 환기탑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분진, 진동, 환기 등이 세대로 영향(전달)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충간 및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아파트 동의 경우 이삿짐 차량(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옥외쓰레기수거함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 세대에 쓰레기로 인한 냄새, 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거 당일 지상주차장 일부가 일시 사용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지상변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주차장, 단지 외 도로와 단지 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벽걸이 TV설치, 무거운 목재액자 설치등 주의 요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법정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동별, 충별, 호별 입면의 돌출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전후면에 소방 에어매트 설치구간에는 교목(키큰 나무) 식재 불가합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문,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동 전면 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복지시설은 관리사무소, 북카페, 도시락카페 등이 있으며, 내부 시설물(비품, 가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동 저층세대의 경우 인근 부대시설의 에어컨 실외 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의 제연휀룸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팸플릿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 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 번호,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제연휀룸, 펌프실, 저수조실, 전기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발코니 섀시의 개폐방향은 홍보물에 적용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1~13층 규모입니다.
- 주차대수는 107대(지하주차장 없음)입니다.
- * 단,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의 "자동차기준액" 미충족시 주차대수와 상관없이 주차가 불기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팜플렛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단지특화도 등은 신청자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생활 결로로 인한 하자발생 시 부담주체는 사용자(임차인)입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화장실은 시스템욕실로 시공됩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냉,온수 분배기 및 난방분배기의 주위배관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다소 소음이 날 수 있으며, 내부에 빨래 건조대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냉장고 설치부위에 급수배관 및 배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세탁기+건조기 (타워형, 일체형) 사용 시 보일러 AS 및 가스안전 점검 등으로 세탁기 또는 건조기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지불 처리 등)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발코니는 소형세탁기를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각 타입별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세대 내부 에어컨은 발코니 외부에 실외기 설치공간만 제공하고, 매입형 냉매배관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설치 시 사용자(임차인) 부담)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 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 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기타사항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 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 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아래 공공주택성능등급은 예비인증 내용으로, 본 인증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①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②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③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해당없음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해당없음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해당없음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해당없음
절수형 기기 사용	**

③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비오톱 조성	해당없음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④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단지 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해당없음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 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콘텐츠	*

⑤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창호(직접면)	해당없음	일괄소등스위치	-
창호(간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지붕 (직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간접면)	해당없음	절수설비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공종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1 LH	건설 1	주식회사 범한종합건설 유한회사 금강종합건설 대흥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
1		전기 1	주식회사 에스와이이엔씨	없음	주식회사 라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바탕건축사사무소
		통신 1	개미성전력 주식회사		1 1 1 1 1 0 0 1 1 1 1 1
		소방 1	유한회사 광성소방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휠체어사용자
거실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전체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丁当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휠체어사용자
节 章	수건걸이 높이 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욕실 (1개소에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한함)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상이 3급이상 장애인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T 5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편의시설 설치관련 유의사항

- ▶ 해당단지는 기 입주단지이므로 <u>장애정도 및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일부 편의시설은</u>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0.30.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